

순경 제1차 형소법 기출해설

해설 : 노형석 교수

1. 다음은 형사소송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형사소송법은 형법과는 달리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신법을 적용할 것인가 구법을 적용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 ② 수사이전 단계를 내사라 하는데,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권리를 피내사자에게도 준용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 ③ 현행 형사소송법은 직권주의 형태를 강하게 나타내며 공판정에서 피고인 좌석의 위치도 변호인과 분리되어 법관과 직접 대면토록 대응하게 위치시키고 있다.
- ④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시작되고, 피내사자의 지위가 피의자의 지위로 바뀔을 규정하고 있다.

1. 【정답】 ①

[해설] ① 옳은 설명이다.

- ②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의 권리를 피내사자에게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③ 검사의 좌석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은 대등하며 법대의 좌우측에 마주 보고 위치하고, 증인의 좌석은 법대의 정면에 위치한다. 다만, 피고인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은 증인석에 좌석한다.(제275조 제3항)
- ④ 공소제기로 인하여 피의자의 지위가 피고인으로 바뀌나, 형사소송법에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2. 다음 중 판례의 태도와 가장 부합하지 않는 것은?

- ①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흔들자 현장에서 체포한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 ②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③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그 수사에 기하여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은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④ 피고인의 뇌물수수가 공여자들의 함정교사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뇌물공여자들에게 뇌물공여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뇌물공여자들의 함정교사라는 사정은 피고인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2. 【정답】 ③

[해설] ③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10.23.

2008도7362)

① 대법원 2007. 5.31. 2007도1903

②④ 대법원 2008. 3.13. 2007도10804

3. 다음은 통신제한조치 또는 감청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감청에 해당하지 않지만,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만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

② 무전기과 같은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는 통신비밀보호법 소정의 '타인간의 대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란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④ 인터넷통신망을 통하여 흐르는 전기신호 형태의 패킷(packet)을 중간에 확보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는 이른바 '패킷감청'도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3. 【정답】 ③

[해설] ③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란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0. 25. 2012도4644)

① 대법원 2010.10.14. 2010도9016

② 대법원 2003.11.13. 2001도6213

④ 대법원 2012.10.11. 2012도7455

4. 다음은 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 자체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도 법률로써 제한될 수 없다.

② 변호인의 접견에는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교도관 등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해서는 아니 되고 보이는 거리에서 관찰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③ 수사기관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불복은 항고에 의해서 할 수 있다.

④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제한할 수 없다.

4. 【정답】 ④ (대법원 1991. 3.28. 91모24)

[해설] ① 헌법재판소는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헌재 1992.1.28, 91마111)

위의 결정에서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 대해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구속된 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접견', 즉 '대화내용에 대하여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고 어떠한 제한, 영향, 압력 또는 부당한 간섭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접견'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지, 변호인과의 접견 자체에 대해 아무런 제한도 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 역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 (헌재 2011. 5.26. 2009헌마341)

제4항)

③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여 이를 할 수 있다.(규칙 제135조의2)

7. 다음은 공소사실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공소사실의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면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공소제기는 효력이 없다.
- ② 간통죄에 있어서는 개개의 간통사실에 대하여 그 일시를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고 일정한 기간 동안 수회 간통하였다는 기재만으로 족하다.
- ③ 공모공동정범에 있어 실행정범의 인적사항이 적시되지 아니하고 범행일시나 장소가 명백히 표시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공모관계, 실행정범의 실행행위가 모두 표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교사범과 방조범의 공소사실에는 교사 또는 방조사실만을 기재하면 족하며, 정범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7. 【정답】 ③

[해설] ③ 대법원 1997. 7. 8. 97도632

- ①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4.9.30, 94도1990)
- ② 간통죄의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 개개의 간통행위의 내용을 이루는 구체적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이 ‘일정한 기간 동안 수회 간음하였다’라는 추상적 범죄구성요건의 문구만을 적시하거나(대법원 1980.7.22, 79도2246) ‘월평균 10회씩 도합 20회에 걸쳐 을과 성교하여 각 간통한 것이다’라고 기재한 경우(대법원 1985.10.22, 85도1449) 또는 ㊸ ‘회수미상 간음’하였다고 기재한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75.6.24, 75도346)
- ④ 방조범의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공범종속성의 원칙에 따라 정범의 범죄구성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대법원 1982.2.23, 81도822)

8. 다음은 공소장변경이 없는 경우 공소사실과 다른 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이다. 판례의 태도와 부합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관세포탈 미수의 공소사실을 관세포탈 예비로 심판할 수 없다.
- ㉡ 히로뽕투약죄 기수의 공소사실을 히로뽕투약죄 미수로 인정할 수 있다.
- ㉢ 특수강도의 공소사실을 특수공갈죄로 처단할 수 없다.
- ㉣ 장물보관죄의 공소사실을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로 의율할 수 없다.
- ㉤ 살인죄의 공소사실을 폭행치사죄로 처단할 수 없다.
- ㉥ 실체적 경합범의 공소사실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
- ㉦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공소사실을 단순과실치사죄로 인정할 수 없다.
- ㉧ 사실적시예의한명예훼손죄의 공소사실을 허위사실적시예의한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8. 【정답】 ①

[해설] ① 모두 옳은 내용이다.

㉠ 대법원 1983. 4.12. 82도2939

㉡ 대법원 1999.11. 9. 99도3674

㉢ 대법원 1968. 9.19. 68도995 손습

㉣ 대법원 1984. 2.28. 83도3334

㉤ 대법원 2001. 6.29. 2001도1091

㉥ 대법원 1987. 7.21. 87도546

㉦ 대법원 1968.11.19. 68도1998

㉧ 대법원 2001.11.27. 2001도5008

9. 다음은 변호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 및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서 공판기일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피의자에 의해 선임된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신문 도중이라도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자유롭게 개입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9. 【정답】 ②

[해설] ② 옳은 설명이다. 공판기일변경신청은 명시적의사에 반하여 할 수 있는 변호인의 독립대리권이다.

①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만 신청할 수 있을 뿐, 그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는 신청할 수 없다.(제266조의3 제1항)

③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30조 제2항)동거인, 고용주는 변호인 선임권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④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243조의2 제3항)

10. 다음은 수사상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검사는 증인신문청구권을 가지나, 증거보전청구권은 가지고 있지 않다.

② 증거보전은 물론 증인신문의 청구를 받은 판사도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③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검사의 출석요구를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공소제기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증거보전청구와 증인신문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은 모두 항고로서 불복이 가능하다.

10. 【정답】 ②

[해설] ② 제184조 제2항, 제221조의2 제4항

① 검사는 양자 모두를 청구할 수 있다.(제184조 제1항)

③ 검사는 기소전후를 불문하고 제1회 공판기일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제221조의2 제1항)

④ 증인신문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나(제184조 제4항),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11. 다음은 증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특별한 지식에 의하여 알게 된 과거의 사실을 진술하는 자를 감정증인이라고 하며, 그에 대해서는 감정이 아닌 증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문한다.
- ② 형사소송법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고, 반대신문권도 배제할 수 있다.
- ③ 사고 당시 10세 남짓한 초등학교 5학년생으로서 비록 선서무능력자라 하여도 그 증언 내지 진술의 전후사정으로 보아 의사판단능력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증언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 ④ 피고인과는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고 다만 병합심리된 것뿐인 공동피고인이 증인선서를 하였다면 그가 한 공판정에서의 진술을 피고인에 대한 공소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11. 【정답】 ②

[해설] ② 형사소송법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2.23. 2011도15608)

① 제179조

③ 대법원 1984. 9.25. 84도619

④ 피고인과는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고 다만 병합심리된 것뿐인 공동피고인은 증인적격이 있으므로 그가 선전한 후 증언한 경우 그 증언은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1982. 6.22. 82도898 참고)

12. 다음은 구속에 대한 판례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
|--|
| <p>㉠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p> <p>㉡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사전에 형사소송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면 그 구속영장 발부결정은 위법하고,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의 제출을 다하고 그의 변호 아래 판결을 선고받더라도 달라지지 아니한다.</p> <p>㉢ 검사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에 대하여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지방법원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02조, 제403조에 의한 항고의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으나, 동법 제416조에 정하는 준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다.</p> <p>㉣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한 경우에는 위법한 구속에 해당한다.</p> <p>㉤ 형사소송법 제88조는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위반하였다면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다.</p> |
|--|

14. 다음은 녹음과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

함)

- ① 수사기관 아닌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피고인의 증거동의를 없는 이상 그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첫째 녹음테이프가 원본이거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일 것, 둘째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 ② 디지털 녹음기로 녹음한 내용이 콤팩트디스크에 다시 복사되어 그 콤팩트디스크에 녹음된 내용을 담은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된 사안에서, 위 콤팩트디스크가 현장에서 녹음하는데 사용된 디지털 녹음기의 녹음내용 원본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라는 입증이 없는 이상, 그 콤팩트디스크의 내용이나 이를 녹취한 녹취록의 기재는 증거능력이 없다.
- ③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보이스펜 자체에 대하여는 증거동의를 있었지만 그 녹음내용을 재녹음한 녹음테이프, 녹음테이프의 음질을 개선한 후 재녹음한 시디 및 녹음테이프의 녹음내용을 풀어 쓴 녹취록 등에 대하여는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였던다면, 극히 일부의 청취가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보이스펜, 녹음테이프 등에 녹음된 대화내용과 녹취록의 기재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④ 디지털녹음기로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후 저장된 녹음파일 원본을 컴퓨터에 복사하고 디지털녹음기의 파일 원본을 삭제한 뒤 다음 대화를 다시 녹음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작성한 녹음파일 사본과 해당 녹취록의 경우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것으로 대화자들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 인정되고, 제반 상황에 비추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녹음파일 사본과 녹취록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14. 【정답】 ③

[해설] ③ 피고인과의 피해자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보이스펜 자체의 청취 결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고인의 음성임을 인정하고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보이스펜의 녹음내용을 재녹음한 녹음테이프, 재녹음한 시디 및 이에 대한 녹취록 등에 대하여는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으나, 보이스펜, 녹음테이프 등에 녹음된 대화내용과 녹취록의 기재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안에서,

원본인 보이스펜이나 복제본인 녹음테이프 등에 대한 검증조서(TIP 녹취록)의 기재 중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므로 그 녹음테이프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은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작성자의 법정진술은 없었으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보이스펜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보이스펜, 녹음테이프 등에 녹음된 대화내용과 녹취록의 기재가 일치함을 확인하였으므로, 결국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8.3.13. 2007도10804)

- ① 대법원 2011. 9. 8. 2010도7497
② 대법원 2007. 3.15. 2006도8869
④ 대법원 2012. 9.13. 2012도7461

15. 다음은 전문수사자문위원회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다.
- ㉡ 전문수사자문위원회는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전문적

㉔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㉔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제245조의3 제3항)

㉔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 ㉔ 현행법상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다.(제214조의2 제5항, 대법원 1997. 8.27. 97모21)

㉔ 규칙 제106조

㉕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제214조의2 제8항)

㉖ 제214조의3 제1항

17. 다음은 공판절차에서 피해자 진술권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
|--|
| <p>㉑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하고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㉒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부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보호법익인 생명의 주체가 아니므로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이 보장되는 형사피해자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한다.</p> <p>㉓ 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신청을 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신청한 모든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p> <p>㉔ 법원은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p> <p>㉕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p> |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7. 【정답】 ③

[해설] ③ ㉒㉓이 옳지 않은 내용이다.

㉑ 제294조의2 제1항·제2항

㉒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부모도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이 보장되는 형사피해자의 범주에 속한다.(헌재 1993.3.11, 92헌마48)

㉓ 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제294조의2 제3항)

㉔ 제294조의3 제1항

㉕ 제294조의2 제4항

18. 다음은 증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증거동의의 철회는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허용될 수 있다.

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정보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 전문증거가 되는 경우,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 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④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할 수 없다.

18. 【정답】 ④

[해설] ④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04.3.11. 2003도171)

- ① 대법원 2010. 7. 8. 2008도7546
- ② 대법원 2008.11.13. 2006도2556
- ③ 대법원 2013. 6.13. 2012도16001

19. 다음은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때 압수한 물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의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도 즉시 반환하지 않은 경우, 그 후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무단퇴정하고, 변호인도 이에 동조하여 퇴정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의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불출석하에 증거조사를 할 경우 증거동의가 간주된다.
- ③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에서 2회 불출정하여 증거동의가 간주된 후 증거조사가 완료되었다면, 항소심에 출석하여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
- ④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여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반복하고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증거동의의 효력이 인정된다.

19. 【정답】 ④

[해설] ④ 변호인의 증거동의의 대리권은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있는 독립대리권이며, 이 경우 변호인의 동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즉시 이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동의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1999.8.20. 99도2029, 88도1628)

그러므로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경우에는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반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2013도3)

- ① 대법원 2009.12.24. 2009도11401
- ② 대법원 1991. 6.28. 91도865
- ③ 대법원 2010. 7.15. 2007도5776

20. 다음은 자백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②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자백보강의 증거가 될 수 없다.
- ③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이 제한된 상태에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자백에 임의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④ 피고인의 자백이 기망에 의하여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와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자백의 임의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20. 【정답】 ④

[해설] ④ 판례는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되는 사유(예 고문, 폭행 등)와 피고인의 자백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자백은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여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한다.(대법원 1984.11.27, 84도 2252)

(TIP → 따라서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와 자백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하면 그 자백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① 대법원 1985. 3. 9. 85도951

② 대법원 2008. 2.14. 2007도10937

③ 대법원 1984. 7.10. 84도846